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2024년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4.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목 차

1. 사업개요 1

2. 급여별 세부내용 2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절차 3

4. 예산관리 6

5. 행정사항 8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 청소년한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엄격함

○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청소년으로서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 지원 확대 필요

나. 사업목적

○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부모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다.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자녀 및 부 또는 모

라. 사업기간: '24.1월 ~ 12월

마. 급여내용 및 지급시기

지원구분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급시기	월별 지급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지원액	월 20만원	월 1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당사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당사자
지원계획	계좌 입금	계좌 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예산액: 493,500천원(시비 100%)

사. 추진체계

서 울 시	자 치 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재원확보 및 배분, 사업운영지침 제공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실시 등 - 사업 홍보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복지급여 지원(신청·접수 - 대상판별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 - 사후관리) - 사업 정산결과 보고 등

2 급여별 세부내용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준용

2024년 달라지는 소득, 연령 지급대상자 판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가구별 소득 판별기준

(단위: 원)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국비사업(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자체사업(90%)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 연령기준(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연령 기준	'99. 1. 1. 이후 출생자	'99. 7. 1. 이후 출생자
자격 인정 기간	'24. 6월말까지	'24. 12월말까지

※ 저소득 지원사업(국비)의 경우,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자체)의 경우, 각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 지급

가. 서울형 아동양육비

○ 기존 저소득 아동양육비(국비 지원사업)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소득기준을 90%로 확대

나. 자립촉진수당

○ 기존 저소득 자립촉진수당(국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가구에 지원

다.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기존 저소득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국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가구에 지원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절차

< 업무 흐름도 >

가. 신 청	⇒	나. 접 수	⇒	다. 조 사	⇒	라. 지원결정	⇒	마. 급여·서비스	⇒	바. 변동관리	⇒	사. 지원중지
온라인/동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확인	⇒ 시·군·구 요청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조사·근로자격 판정	⇒	자치구 사업팀 / 결정, 통지	⇒	자치구 사업팀 / 급여 지급	⇒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가구구성 등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	자치구 사업팀 / 급여 중지

가. 신청 ~ 나.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기존 청소년한부모 급여 신청 절차와 동일하나, 다음의 사항을 안내

- 소득·재산 판정 결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원(아동양육비 월 35~40만원 등)과 함께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월 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형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다.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소득·재산 확인 후 소득인정액 환산, 급여자격 책정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의 방식대로 절차 진행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부적합' 판정 후 사업팀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보(성명, 연락처, 중위소득 등) 이관

라. 지원 결정 (사업팀)

○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보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에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추가 통지 가능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의 방식대로 절차 진행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통지(서식1)

마. 급여 지급 (사업팀)

○ (급여 내용)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 (중위소득 90% 이하)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검정고시학습비 등 : 연 154만원 이내

○ 매월 정기급여일은 20일로 하며, 말일 날까지 추가지급 가능

○ 급여담당자는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전자결재 후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수급자 계좌로 이체

※ 중위소득 90% 이하에 대한 서울형 아동양육비(월20만원) 및 중위소득 65%~90%에 대한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지급 불가

○ 매달 말일, 급여를 지급한 지원 대상가구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수급 월을 표시하는 명단을 작성(엑셀양식 제공)하여 제출(자치구 → 서울시), 지역별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받고 중복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을 취해야 함

마. 변동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지원 대상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의 방식대로 변동관리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① 상반기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하반기 지원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하반기까지 자격 유지 (단, 당사자의 신고 또는 지자체의 사실확인을 통해 변동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② 1월 및 7월에 선정기준을 재확인 후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

마. 지원 중지 (사업팀)

○ 중지사유 발생 즉시 중지를 결정하며,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의 방식대로 지원 중지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

*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추가 통지 가능

4 예산관리

가.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24년 예산
			편성목	통계목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계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186,000) 372,0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계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2)**	**(x-) 493,500**

○ 국·시비 매칭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과 구분 필요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국비-시비 매칭비율 50:50로 편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월35~40만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에 해당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301-02): 시비 100%로 편성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추가지원(월 20만원) 및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에 해당

○ 세부사업을 혼동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

※ 소득구간별 아동양육비 지원현황

구 분	지원총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서울형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55~60만원	월 35~40만원	월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소득구간별 자립촉진수당 및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재원(예산사업명)

구 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국·시비 매칭사업)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시비 100% 사업)	

5 행정사항

○ 기초생활급여 소득 산정 시 중위소득 65% 이하에 대한 아동양육비 추가지원금(월 20만원)은 공제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및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자치구는 분기별 사업비 교부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

○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자치구는 연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는 매월 급여일(20일) 기준 신청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점검

- 서울시는 필요 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6조(강제징수)

[서식 제1호]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아동 이름 및 생년월일	/		급여 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비고						

1. 귀하는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아동양육비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날짜에 맞추어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아동양육비 수급 아동의 경우,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됩니다.
6.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대 상 제 외

신 청 내 용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 상 제 외 사 유	[ ] 소득금액이 선정기준 초과 [ ] 수급자격심사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서식 제2호]

<table>
<tr><td colspan="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생 년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소(시설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세대주성명(시설명)</td><td colspan="3"></td></tr>
<tr><td>세대주와의관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지원신청
제공종류</td><td>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td><td colspan="2"></td></tr>
<tr><td>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위와 같이 지원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4">붙임 :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학원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2. 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3.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증빙서류(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td></tr>
<tr><td colspan="3">구비서류 : 없음</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신문용지 54g/㎡)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신청서

<table>
<tr><td colspan="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td></tr>
<tr><td rowspan="2">세대주</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세대주와의관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신청내역</td><td colspan="2">계_____원 : 학원등록비( )원
교 재 비( )원
학 용 품 비( )원</td></tr>
<tr><td rowspan="2">등록학원
(대안학교)</td><td colspan="2">(_____)학원 (학원등록번호 :)</td></tr>
<tr><td colspan="2">수강기간 : ~</td></tr>
<tr><td colspan="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3">구비서류 : 1.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학원등록기간 현황 1부
2. 학원 등록비(또는 교재비 포함) 내역 1부
3. 청소년 한부모 가구 검정고시 학원 전월 수강현황 1부
4. (신규신청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1부
5. (필요시) 학원입금통장 사본 1부 등</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신문용지 54g/㎡)

* 대안학교 재학 후 검정고시를 보는 대안학교의 경우는 동 양식을 활용하여 대안학교 학비를 지급토록 함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교통비, 교복구입비)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교통비, 교복구입비)

<table>
<tr><td rowspan="2">세대주</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세대주와의관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신청내역</td><td colspan="2">계_____원 : 교 통 비( )원
교복구입비( )원</td></tr>
<tr><td rowspan="2">재학학교
(대안학교
포함)</td><td colspan="2">○○○ 중학교/고등학교</td></tr>
<tr><td colspan="2">학년 :</td></tr>
</table>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2. 교복구입 관련 증빙서류 1부 3. 청소년 한부모가구 제출서류 사본 1부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 제3호]

[중위소득 65%~90%]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연번	지역(자치구)	지원대상 아동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수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시월	종료월			
1	*종로구*	*홍길동*	*180912*	*'23.1.*		*홍두깨*	*980412*	*000-0000-0000*